

2025년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3차 모집 공고

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
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7월 1일
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- **[사업명]**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
 - **[공고·접수기간]** 2025. 07. 01.(화) ~ 2025. 07. 14.(월)
 - **[지원기간]** 2025.08.01.~ 2025.12.31. *협약시작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.
 - **[모집대상]**
 - 광주광역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*
 - * 단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(23개 분야)에 한해 10년
이내 창업기업으로 함(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5조제4항)
 -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
 - 해당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
- ※ 2023년, 2024년 수혜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,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
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
- * 2023년, 2024년 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.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
가능. 대표자 지원 불가

☑ 제외대상(공통사항)

- 부도, 채무불이행, 법정관리,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
-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%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
-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기업
-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·지자체 사업 수혜자
- 해당 사업체(또는 사업장)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(본인·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)
-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 제외 등

○ **[지원프로그램]**

- 기업별 최대 4인 이내 지원(우수인재 1인 이내, 우수경력자 3인 이내)

지원유형		자격요건	지원금액	모집규모
유형1 (신규 인력)	우수인재 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년 신규 고용자(재입사자 제외) - 석박사 소지자 또는 관련기업(직무)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인재 직무는 개발·연구 등 기업 수요에 따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, 유망 ICT 산업 분야 기술자 등 우대하되, 경력근무에 따른 평가 점수 차등 적용 - (해당시) 역외인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4년 12월 31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광주 외 지역 거주자 ·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광주광역시로 거주(전입일) 등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· 체제비 월 50만원 이내 지원(근로자에게 직접 지원) · 사업비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	35백만원 이내	5명 내외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연봉의 70%의 인건비 지원 (연봉 3,500만원 이상 조건, 최대 연 3,500만원) 		
유형2 (기존 인력)	우수경력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주 소재 창업기업(7년 이내)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 수로 2년이상 -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 	6백만원 이내	4명 내외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(최대 600만원) 		

※ 지원금액의 경우 지원기간에 따라 산출되며 조정될 수 있음.

○ **[지원방법]** 선정된 수혜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

-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시 사업비 전액 환수

1차 지급 2025.09월	⇒	2차 지급 2026.1월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
※ 사업비 지급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, 지급 시기와 사업비 집행일(입금일)은 사업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○ **[수행 프로젝트]**

- 분야 : 제한없음
-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(우수인재) 및 기업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(우수경력자)
- ※ R&D, 디자인 개선, 마케팅, 조직관리, 재무관리, 투자유치(자금조달) 등

○ **[채용 및 근무요건]**

- (우수인재) 광주광역시 내 거주 필수
-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
-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(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) 중복 지원 불가 →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

② 평가방법 및 기준

○ **[평가방법]**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

- (예비진단)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
 -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 : 국세(지방세) 체납, 국가R&D 참여제한기업(대표자), 부채비율 등
- (선정평가)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 -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/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,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‘지원 가능 대상’ 으로 분류하고,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‘최종 지원 대상’ 선정
 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‘성과 창출가능성’ 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
 -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
 - 기 수혜기업은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예정
 - 예비 후보기업 선발 : 각 분야별 선발 인원의 30% 이내 예비 기업 선발 (기존 협약된 기업이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협약 종료시 잔여 사업비 환수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순위에 따라 예비기업 추가 지원)

○ **(평가기준)**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

구분	항목	지표	배점	총점		
우수인재	정량적 평가 (30점)	인재역량	◦ 인재의 역량 및 근무이력	10	100	
		기업역량	◦ 경영건전성	10		
			◦ 기업 신용도	10		
	정성적 평가 (70점)	수행능력	◦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◦ 프로젝트 수행 동기 및 개선방향 도출 적정성 ◦ 인재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	20		
			◦ 사업계획의 구체성 ◦ 제품(서비스)의 개발 추진 및 프로젝트 전략	15		
			◦ 기업경쟁력 및 사업역량 사업 추진능력 ◦ 목표수립 및 성과창출전략의 구체성 ◦ 기업 및 제품(서비스)성과 달성 가능성	20		
◦ 사업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◦ 제품(서비스)의 상품화 가능성 및 성장성			15			
우수 경력자	정량적 평가 (30점)		인재역량	◦ 인재의 역량	10	100
			기업역량	◦ 경영건전성	10	
정성적 평가 (70점)		수행능력		◦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◦ 프로젝트 수행 동기 및 개선방향 도출 적정성 ◦ 인재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	20	
	◦ 사업계획의 구체성 ◦ 제품(서비스)의 개발 추진 및 프로젝트 전략		15			
	◦ 기업경쟁력 및 사업역량 사업 추진능력 ◦ 목표수립 및 성과창출전략의 구체성 ◦ 기업 및 제품(서비스)성과 달성 가능성		20			
	◦ 사업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◦ 제품(서비스)의 상품화 가능성 및 성장성		15			

3 추진일정

절 차	일 정	추진내용
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일체 (온·오프라인) 접수	2025.07월	(재)광주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
정량평가(1차)	2025.07월	인재의 역량 근무이력, 기업건정성, 신용도 등
선정평가(2차)	2025.07월	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
선정결과 통보	2025.07월	신청기업 평가 후 (E-mail 통보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협약 체결	2025.07월~8월	협약추진
사업수행 및 중간점검/현장실태조사	협약일로부터 ~2025.12.31	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등
지원금 지급 (2회)	중간 및 최종점검 후	2025년 9월, 2026년 1월
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B 관리	지원종료 후 3년	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※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4 제출서류

연번	제출여부	서류명	제출부수	원본여부	비고
1	공통 (필수)	○ 참여기업 신청서 ○ 사업계획서 ○ 기업현황 카드	각 1부	원본 및 사본	서식 1~3
2		○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※덧붙임 참고)	1부		서식4
3		○ 지원인력 자기소개서	1부		서식5
4		○ 신청자격 확인서	1부		서식6
5		○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	1부		서식7
6		○ 이행서약서	1부		서식8
7		○ 사업자등록증	1부		-
8		○ 법인등기부등본	1부		-
9		○ 최근 3년간 재무제표(22년, 23년, 24년)	1부		-
10		○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	1부		-
11		○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1부		-
12		○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완납증명서	1부		-
13		○ 국세 완납증명서	1부		-
14		○ 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		-
15	공통(선택)	○ 기타(특허, 수출, 연구소, 인증 등)	1부	-	
16	공통(필수)	○ 신청기업현황조사표(*엑셀파일 양식)	이메일제출	-	붙임3
17	신청 분야별	필수 (유형1 우수인재) - 근로계약서 또는 (미채용시)채용확약서 - 석박사 증명 서류 또는 근무한 경력 자료 예시) 경력증명서(근무처발급본), 졸업증명서 등	각 1부	-	
17		필수 (유형2 우수경력자) - 신청인력의 근로계약서(2024년도, 2025년도) - 신청인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증명서류 (사업계획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)	각 1부	-	

※ 제출한 서류는 보완 불가하며, 사전 요건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.

※

5 문의 및 제출처

- 접수기간 : 공고개시일 ~ '25. 07. 14.(월) 18:00까지
- 문의처 :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(062-602-7227)
- 제출방법 : 이메일로 제출 후 원본 서류 제출

(방문 또는 접수 마감일 기준 우편 도착분 제출)

- ① 원본 서류 제출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원본 1부)
- ② 스캔 파일 제출(PDF) :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파일명 저장 이메일 제출

※ 이메일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한가지라도 누락시 평가 사전제외 대상으로 판단

- 제출처
 - 메일접수처 : hansol@gjtp.or.kr
 - 우편(방문)접수처 : (61008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
(재)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※ 접수기간 내 도착 必

⑥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
○ (지원 제한)

-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,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(각종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중인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- 법인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
-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미반영” 또는 “부정적”인 경우
- 자본 전액잠식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
○ (지원 취소)

-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, 주관기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-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
-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

○ (인력 제한)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 - 신청기업의 대표(사업주), 대표(사업주)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
-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< 친족관계 >

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】

1. 6촌 이내의 혈족.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덧붙임

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예시)

○ 사업계획서 내

로그인 자리에서 본인 이름이 보이도록

[신청내역]이 아닌 [참여내역] 선택

6개월 이상 선택하여 검색

검색결과 내용 유무 관계없이 모두 캠퍼하여 제출

사업유형	사업명	기관명	참여기간	진행상태
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.				

참고사항

- 정부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내역입니다.
- 타 기관에서 제공된 일자리 정보의 참여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

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①	인공지능
②	빅데이터
③	5G+
④	블록체인
⑤	서비스플랫폼
⑥	실감형콘텐츠
⑦	지능형 로봇
⑧	스마트제조
⑨	시스템반도체
⑩	자율주행차
⑪	전기수소차
⑫	바이오
⑬	의료기기
⑭	기능성 식품
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
⑯	미래형 선박
⑰	재난/안전
⑱	스마트시티
⑲	스마트홈
⑳	신재생에너지
㉑	이차전지
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